

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 (제17조의2제2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외상환자 진료를 위한 외상 소생실, 방사선실, 중환자실, 수술실은 상호간에 구획되어야 하고,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근접성을 갖추어야 하며, 기존 시설과는 독립적으로 설치·운영되어야 한다.

2. 개별기준

가. 시설기준

시설		개수	단위면적 (㎡)	총면적 (㎡)	세부기준
외상 소생 구역	외상 소생실 (치료실)	2	20	40	- 환자출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하게 설치할 것 - 헬기장, 외상 중환자실의 병상, 외상수술실로 직접 연결되는 전용동선을 확보할 것 - 소규모 수술이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추는 것
	외상 환자 진료 구역	1	40	40	- 최소 6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- 의료가스와 음압공급유닛을 확보할 것
	외상 통제실	1			119, 구급차, 항공이송대 등과 직접 연결하여 환자 상태를 전달받고 통제·지도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설비를 확보할 것 - 입·퇴원하는 중증외상환자의 정보를 입력·관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구비할 것 - 기능유지를 위한 인력을 갖추는 것
외상 수술실		2	50	100	-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을 구분할 것 - 기능유지를 위한 인력을 갖추는 것
외상 중환자실의 병상		20	10	200	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,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소 등을 제외한 면적이며, 이들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600㎡ 이상(병상당 30㎡ 이상)일 것
외상 입원실의 병상		40	4.3	172	총면적은 입원병상에 있는 간호사실,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실, 청결물실, 오물처리실 등을 제외한 면적이며, 이들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900㎡ 이상(병상당 22.5㎡ 이상)일 것
회의실 및 의사실		1			- 회의실에는 시청각 기자재를 완비할 것 20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것 - 회의실과 의사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
의사 당직실		1			4명 이상이 동시에 휴식·대기할 수 있을 것 - 탈의, 세안 등이 가능하고, 필요시 남녀 구분할 것 - 중환자실, 입원실 병상의 전체 시설면적에 포함됨
방사선실	일반 촬영실	1			- 외상전용 이동 X-선 촬영기 1대를 보유할 것 - X-선 촬영할 수 있는 시설을 외상소생실 침대 위에 갖춘 경우 일반촬영실을 설치한 것으로 봄
	CT 촬영실	1			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(이하 “종합병원”이라 함)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하나, 외상

				환자 발생 시 외상환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
혈관 조영실	1			· 외상환자 전용으로 설치할 것
MRI실	1			· 응급의료센터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하나, 외상환자 발생 시 외상환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
검사실	1			· 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, 동맥혈가스분석, 요검사가 24시간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을 것 · 기능유지를 위한 전담 검사인력을 갖출 것 · 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
혈액은행	1			· 필요한 혈액제제를 보존하고 24시간 신속하게 혈액제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· 기능유지를 위한 전담 관리인력을 갖출 것 · 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
헬기장				·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헬기장의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 · 옥상헬기장의 경우 외상소생구역, 외상수술실, 외상중환자실로의 이동통로가 있도록 할 것

(주) 위의 개수, 단위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

나. 인력기준

인 력	비 고
의사 1) 외과, 심장혈관흉부외과,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의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둘 것 2) 24시간 외상팀과의 연계·지원 및 외상환자 치료 등을 위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3) 외상환자에게 즉시 수술 또는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둘 것 간호사 1) 외상소생구역: 상시 2명 이상의 간호사를 둘 것 2) 외상 중환자실의 병상: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른 간호사 수를 둘 것 3) 외상 입원실의 병상: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별표 5에 따른 종합병원 구분란의 간호사 수를 둘 것 그 밖의 인력 · 중증외상환자의 등록 및 통계자료의 작성 등을 위하여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을 2명 이상 둘 것	모든 인력은 권역외상센터의 전담 인력이어야 한다. 다만, 의사의 인력기준 중 2)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3)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종합병원 내 해당과의 전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다. 장비기준

장비명	외상 소생실	외상환자 진료구역	외상 중환자실	외상 수술실
환자감시장치	1실당 1	1병상당 1	1병상당 1	1실당 1
약물주입기	1실당 4	1병상당 2	1병상당 4	1실당 4

제세동기	1실당 1		2	1실당 1
인공호흡기	1실당 1		3병상당 2	
무영등	1실당 1			1실당 1
수술대	1실당 1			1실당 1
전기수술기(Electrosurgical unit)	1		1	1실당 1
체온조절장치	1		3	
이동용 인공호흡기	1		2	
마취기	1			1실당 1
이동형 외상환자 침대	3			
급속혈액가온주입기	2		2	1실당 1
이동형 환자감시장치	1		2	
초음파검사기 (심초음파 가능한 장비)	1		1	
비침습적심박출량감시장치	1		2	
지속적신대체요법(CRRT)			3	
심부저체온유도장치			1	
체외막산소공급기(ECMO)			2	
중환자용 전동침대			1병상당 1	
흉벽진동기			2	
중앙환자감시시스템			1	
체외순환기				1
이동형 방사선발생장치(C-arm)				1
자가수혈기(Cell saver)				1

(주) 이동용 인공호흡기 중 1대는 MRI실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, 외상소생실의 경우 수술이 가능한 침대를 갖춘 경우 수술대를 갖춘 것으로 봄

라. 운영기준

- 1) 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중심으로 3개 이상의 외상팀을 구성하고, 외상팀 단위로 신속 대응체계 및 당직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.
- 2) 의료기관의 장은 다발성 외상을 포함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응급대응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각 외상팀별로 전문과목 구성과 과목별 인원수를 산정하여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한다.
- 3) 의료기관의 장은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과 장비는 반드시 외상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되, 의료기관 내 다른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응급상

황인 경우에는 외상환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권역외상센터 인근에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,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- 4) 외상응급수술을 위해 외상수술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